

1998년 12월 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2차 본회의)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2.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6.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7.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8.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9.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10.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1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12.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3.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14.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 o 의원선서 및 인사 2
- o 5분자유발언 3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 2.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 4.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6
-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 6.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7
- 7.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7
- 8.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7
- 9.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7
- 10.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7
- 1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7

- 12.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9
- 13.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박관용 의원 외 21인 발의) 9
- 14.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1
-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2

(14시04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임종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선서 및 인사

(14시06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23일 자로 전국구 의석을 승계하신 이형배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국회의원 이형배

○의장 박준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선서하신 이형배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형배 의원 6년 6개월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1년 총선 당시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구에서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또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13대에 들어와서는 농수산위

원회에서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있는 농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꽤거리 정치꾼과 협잡·사기 정치꾼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저는 정치권에서 퇴출당한 사람입니다. 퇴출당한 이후에 저는 저 퇴계원 옆에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가서 농민들과 같이 논을 매고 밭을 매면서 농사일에 열중하던 중 오늘 이 자리에 또다시 이렇게 서게 되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우리 정치권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은 부정부패의 온상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야 정쟁을 중지하고 우리는 정말 생산적인 그런 정치, 정말 발전적인 그런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기자가 윈스턴 처칠 경에게 정치가가 되기 위한 자질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처칠 경은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일, 내주, 내월 그리고 1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1년 후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 엄청난 IMF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엄청난 IMF 사태 이후에 중산층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농민, 노동자, 서민들은 갈 곳이 없으며 거리에는 노숙자가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정치적인 해결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정말 여야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이 사람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이 의원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4시14분)

○의장 박준규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부평갑구 출신이신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25 당시 참혹한 혈전의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명을 바쳐 싸워 나라를 구하고 48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참전용사 30여만 명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6·25 당시 참전용사는 총 12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40여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10여만 명은 현재 연금혜택이나 이런 등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30여만 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오늘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6·25 참전의 희생자가 또 참전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김정일의 통치하에서 굶주림과 억압 속에서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삶과 같은 삶의 참담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그분들의 모든 희생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으며 그 터전 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재건하여 오늘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부상하면서 잘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 도리는 뿌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역경을 딛고 지켜 온 발전된 조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신명을 바쳐 혈전을 치룬 6·25 참전군에 대해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그분들의 요구는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연령이 벌써 적은 분들은 65세에서부터 많은 분들은 80

여 세에 달하고 있어 이제 얼마 안 지나면 모두 세상을 하직하실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요구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염출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6·25 참전 군인으로서의 공지와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지정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본인들은 참전 군인의 명예와 공지를 지키게 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며 몸 바쳐 조국을 수호한 공적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고 신명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도 국가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섭섭한 마음을, 한을 풀어 주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직 국익 차원에서 조국을 수호하신 6·25 참전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갑구 출신이신 박세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직 의원 박세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엽제 후유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월남 참전 전우들을 대신해서 월남전 당시 고엽제의 그 유독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살포케 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응분의 배상을 촉구하고 또한 지속적인 국가보상을 재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1964년부터 9년간 약 32만 명의 한국군이 자유의 십자군으로 월남전에 파병이 되어서 아세아의 공산화를 막고 국위를 선양하고 한미 안보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월남에 파견되는 대신에 한국군이 파견됨으로써 60년대 초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했던 북한군의 한반도에서의 제2의 6·25를 방지하였으며, 또 나아가서는 오늘날 한국이 고도산업사회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군은 불행하게도 5000여 명의 전사자와 1만 1000여 명의 전상자를 냈으며 귀국 후에는 병명도 생소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참전용사

가 무려 3만여 명에 달할 정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75년 종전 이후 미국 내 고엽제 피해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를 제조한 다우케미컬사를 비롯한 7개 농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억 8000만 불의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소수 군인을 파견했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고엽제 환자들에게마저도 배상을 하면서도 유독 한국 군인만은 제외한 채 84년 이 사건을 종결하였고 잔여 배상금 7200만 불마저도 한국을 배제한 채 적십자사 및 전상자 자녀교육비 등에 기증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미국 내 여러 참전단체는 본건을 제소해서 76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집단 소송명령을 내렸고, 84년도에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와 재미공관 그리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묵과할 수가 없어서 94년 6월 뉴욕 연방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한 바가 있으나 이미 잔여 배상금이 모두 사용되었고, 제소시기가 늦어져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패소판정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6·26 파월 당시 한미 양국이 정부 간에 외교문서로 체결한 브라운각서가 30년간의 비밀보존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내용이 공개되는 때를 같이 해서 미 해군장성이나 정책관계관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 ‘미국 군부는 살초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살포케 하였다’라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찾아내어서 97년 7월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오늘 현재 미국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월남전의 고엽제 환자는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전의 첫 희생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사상자로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자유우방인 미국 정부에게 브라운각서에 명시된 대로 ‘한국군의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당초 한미 간에 합의된 보상금의 2배로 지급한다’는 그 약정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하면서 정부에 응분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박 의원, 감사합니다.

5분발언 중에 상당히 뜻이 있는 발언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5분발언이라고도 관계부처에 꼭 참고사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 의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허남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제가 60년 동안 교육한 사람입니다. 요즘 교육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한테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첫째로, 선생의 정년단축 왜 하나, 정말 교원노조가 우리 학교에 필요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선생과 노동자…… 지금 선생이 45만입니다. 그만두고 사회에 나온 선생도 50만 이상, 100만이 됩니다. 어떻게 이 선생님들이 하룻밤 사이에 노동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선생이라는 존경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부모를 대하고, 사회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노동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노동자가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나라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다음 선생의 정년문제입니다.

내가 29일 후면 팔순입니다. 우리 여기 의장님도 칠순이 넘었습니다. 그 위의 높은 분들도 칠순이 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 70이 넘어도 일을 잘 하는데 왜 우리 선생만 60이 지나가면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이 기준이 없는 소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얼마나 통분할 일입니까? 어떻게 선생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내 자리에 보면 내가 보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세미나를 해서 우리나라 1만 2000군데에다 발송했습니다. 저기 8000개의 반대한다는 서류가 들어 있습

니다. 무거워서 못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한 것은 25만 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래도 그냥 계속할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상위에서 또 당정회의에서 반대하고 반대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보와 교원노조입니다.

왜 교원노조를 반대하느냐 하면 안보 때문입니다.

우리 교원노조 결성선언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학생, 양심적인 지식인 단합해라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북에서 왔는데 이북에서 선호하는 그 문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서울신문 89년 8월 6일자를 보면 학급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참 교육을 외치는 그 선생님이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신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신문 보면 알 것입니다.

이래도 이것이 그대로 좋습니까?

또 그리고 요즘 교원노조에서 결성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례라고 안 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끝난 후에 노동가를 부르는데 노동가 가운데 해방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이래도 색깔이 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를 위태롭게……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입니다. 이북하고 전쟁합니다. 공산당하고 전쟁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우리 교육을 위태롭게,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고려해서 교원노조가 합법이 안 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얼마나 이것이 혼란이 됐느냐 하면 교장은 죽을 판, 교감은 떡판, 교사는 미칠 판, 교실은 난장판, 학생은 개판, 일반직은 살얼음판, 교육부는 철판…… 말 한 마디도 안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져온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

느냐 이 얘기에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열린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간조선 12월호 보세요. 열린교육 이것 미국에서 하다가 나빠서 내던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부 세미나식 교육하고 있는데 옛날에 던진 것을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사실은 전문가 교육을 해야지 비전문가 교육하냐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김 의원, 감사합니다. 노익장을 과시해서 축하도 드리구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일에는 의사일정이 한 30개가 있고 예산안 통과도 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지장 안 주시도록 내일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32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기 안산갑구 출신이신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대리 김영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규 의장, 김봉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엔지니어링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무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둘째,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의무적으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동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한국엔

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유사명령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학관의 휴관 시 신고 제도와 과학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과학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종전에는 과학관이 연간 법정 개방일수를 단축하거나 두 달 이상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으며 둘째, 과학관에 대한 시정·정관명령, 등록 취소 시 등록증 반납의무, 유사명칭 사용금지제도, 과학관에 대한 보고요청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1998년 11월 23일 제198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과정을 거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동년 11월 27일 제 8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하였는바 그 결과를 법안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부터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한 의무가입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대하여 정관개정, 사무처리 방법 및 협회의 자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이 199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동 조 동 항의 시행일을 6개월간 유보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 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을 삭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 주요 개정 내용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와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4.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5.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38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자원위원회의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존경하는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신영국 산업자원위원회 신영국 의원입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전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보조하여 취득한 자산은 이를 동 회계에서 출자한 것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군납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군납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주한미군이 군납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외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에 대한 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국제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소관 행정기관을 산업자원부에서 특허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 그리고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사한 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0일 제6차 위원회에서, 그리고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11월 27일 제8차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치설계심의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서의 효력을 현행법대로 재판상의 화해로 유지시키고 개정안에서 삭제된 권한위탁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7.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8.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 협정 비준 동의안
9.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10.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11.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14시45분)

○부의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정부

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광진갑 출신의 준경하는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김상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동의안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미 51개국과 체결한 바 있는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입니다.

한·카자흐스탄협약은 52번째로, 한·우즈베키스탄협약은 53번째로 체결되는 이중과세회피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국 간 상호투자 및 자본과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최초의 상설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하여 국제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 동연구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캐나다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

가 최초로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으로 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캐나다 간의 상이한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이중사회보장료 납부의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약협약은 1988년 106개국의 합의로 채택된 국제연합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50번째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관련 제약 당사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하여 조직화·광역화·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관련 국제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열 번째 범죄인인도조약으로서 한미 간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범죄인 인도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어 양국 간 범죄인의 상호인도를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고 각종 범죄 예방과 진압 및 형사문제에 있어 사법정의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6건의 동의안은 1998년 11월 30일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4시52분)

○부위원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전남 광양 출신의 존경하는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김명규 산업자원위원회 김명규 의원입니다.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

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코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을 금년도의 31조 원보다 8조 3000억 원 증액한 39조 3000억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 계약체결한도는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3조 6000억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1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1월 20일 제6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봉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관용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54분)

○부위원장 김봉호 의사일정 제13항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부산 동래갑 출신의 존

경하는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박관용** 박관용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8년 7월 10일 본 의원과 21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8월 17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광복에 이어 발생한 국토 분단과 6·25 동란으로 인하여 남북한에는 1000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서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미 지난 1991년 2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나 남북한 관계가 여의치 못하여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유엔 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민간차원에서 적십자사를 통한 구호물자 지원 등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 이산가족의 소망인 생사확인이나 교류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제3국을 통한 비공식적인 접촉이나 연락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아 이산가족들 개인이 겪고 있는 인간적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의 민족인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생사조차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생사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북한 측에 제의하자는 취지에서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회는 21세기를 앞두고 지난 세기의 민족사의 잔재인 남북 간의 대결과 반목이라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음을 인식하여 분단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자 한다.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도에 아직도 남아 있는 반세기에 걸친 남북 간의 대결로 인하여 부모형제를 지척에 두고서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1000만 이산가족의 안타까움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김봉호 부의장, 신상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분단 이후 1985년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이 있었을 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 1세대들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하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남북 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긴급하고 더 절박한 이산가족 교류라는 인도적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이기에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분단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재회가 남북 간의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사만이라도 확인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쌍방의회가 해당 적십자사에 적극 권고할 것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남북관계의 개선에 필수적 과정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이산가족 문제해결과 같은 민족적, 인도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 의회 간에 만남이 이루어져 의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상응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단 극복을 위하여 이산가족이라는 핏줄

이 서로 상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30일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결의안의 제명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상봉이라는 두 글자를 포함하는 수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참고로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본 의원은 지난 91년 2월 국회 통일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결의안과 동일한 취지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통일특위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과 남북 적십자사회담 재개 등을 위해서 남북 쌍방 의회가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다하도록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우리 국회의 의지가 북한 측의 비협조로 북쪽에 공식 전달을 못 한 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작금에 이른 점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다양한 포괄적인 시도로서 남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주어진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신상우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통일외교통상 위원장 제출)

(15시02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14항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유홍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유홍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유홍수 위원장입니다.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1998년 11월 28일 이신범 의원, 김상우 의원, 이건개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30일 제9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 핵문제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에 의하여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왔습시다라는 지난 8월 이후 북한이 평북 대관군 금창리 일대에 핵시설로 의심되는 대규모 지하시설물을 건설하고 있음이 한미 양국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의혹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사찰을 북한 측에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 시설이 핵 활동과 무관한 시설이므로 사찰을 허용하려면 그들이 받은 모욕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등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이 제네바합의상의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확인하는 데 협조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금강산 관련사업 등 우리의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간첩선 남파를 기도하여 대남 무력도발 행위를 재개함으로써 적화통일 야욕에 아무런 변함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온 국민의 뜻을 모아 강

력한 대북 경고와 아울러서 북한 핵 의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국회는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간첩선 침투를 시도하는 한편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 일대에서 핵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이 지하시설에 대한 의혹 해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은 물론 1992년 2월 남북이 서명하여 발효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1994년 10월에 체결된 ‘미·북제네바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주목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에게 지하 의혹 시설에 대한 완전한 사찰을 수용하여 관련 의혹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당국이 대남적화선을 포기하고 대남무력도발을 즉각 중지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에 조속히 응하여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미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 해소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의혹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의지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이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09분)

○**부의장 신상우** 의사일정 제1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 사상갑구 출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권철현** 환경노동위원회의 권철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오시던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국정감사 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로서 장애인 고용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11일 제8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출선수범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률이 특히 낮은 현실을 주목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1.15%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법정 의무고용률인 2% 달성을 위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을 법적 하한선보다 높이고 둘째,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도 부담금 납부를 선호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데 그 중요한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가 법정 의무를 다해야 하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시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입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상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 의원 수(226인)

○출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
과학기술부장관	강창희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

○출석 정부위원

환경부차관	정진승
-------	-----

【보고사항】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형배	전국구	한나라당	1998.11.23

○의원 사망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조중연	전국구	한나라당	1998.11.17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연월일
2002년월드컵등 경기대회지원특별	김동주	1998.11.19
경제구조개혁및 실업대책특별	정영훈	1998.11.20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농어촌 및도시 영세민 대책 특별	권기술 권오을 김문수	한나라당	1998. 11.23	
	김영진 윤한도 이강두			
	이규택 이부영 이상현			
	이우재 이해구 정문화			
	주진우 황성균			
	김길환 김병태 배종무			
	서정화 송훈석 원유철			새정치 국민회의
	이길재 정세균 정한용			
	조성준			
	김기수 김학원 노승우			자유민주 연합
정우택 정일영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농림해양수산	최선영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1.20
	허남훈	자유민주 연합	
2002년월드컵등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	박주천	한나라당	1998. 11.19
	이기문	새정치 국민회의	
	김일주	자유민주 연합	
경제구조개혁및 실업대책특별	노기태	한나라당	1998. 11.19
	이강희	새정치 국민회의	
	어준선	자유민주 연합	

○간사 개선

위원회	전임간사	후임간사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김원길	조홍규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1.19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천용택	환경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1.21
김성곤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노동		
배종무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신낙균	환경노동	농림해양수산	자유민주 연합	
박세직	환경노동	산업자원		
김종학	산업자원	환경노동	자유민주 연합	
차수명	법제사법	농림해양수산		
노승우	농림해양수산	법제사법	새정치 국민회의	1998. 11.23
김성곤	환경노동	과학기술 정보통신		
천용택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노동		
신낙균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자유민주 연합	1998. 11.25
배종무	환경노동	농림해양수산		
김종학	환경노동	산업자원	자유민주 연합	
박세직	산업자원	환경노동		
노승우	법제사법	농림해양수산		
차수명	농림해양수산	법제사법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 특별	이상배	주진우	한나라당	1998. 11.23
	김문수	박원홍		
	이재오	정형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경제구조 개혁 및 실업대책 특별	안택수	김홍신	한나라당	1998. 11.23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 대회지원 특별	이원복	박성범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이형배	한나라당	1998.11.23
홍문중	새정치국민회의	1998.11.25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조중연	한나라당	1998.11.17

○의안 제출

재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8일 정부 제출)

11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8일 정부 제출)

11월 19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8일 정부 제출)

11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8일 정부 제출)

11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안전기획부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 11월 18일 한화갑·구천서·김인영·김종호·임복진·이성호 의원 외 150인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국방과학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9일 정부 제출)

11월 2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9일 정부 제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9일 박관용·김진재·김정수·정재문 의원 외 26인 발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9일 김허남 의원 외 21인 발의)

가상교육법안

(11월 19일 이상희·강경식·권영자·김기춘·김덕·김도연·김명섭·김용갑·김종하·김중위·김태호·김현욱·남궁진·박광태·박세환·박우병·백남치·양정규·이규정·이공규·이미경·이양희·이재오·이태섭·정문화·정의화·정재문·정형근·정호선·조영재·차수명·하경근·한이헌·함종한·허남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생명공학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9일 이상희·강경식·권영자·김기춘·김덕·김도연·김명섭·김용갑·김종하·김중위·김태호·김현욱·남궁진·박광태·박세환·박우병·백남치·양정규·이규정·이공규·이미경·이양희·이웅희·이재오·이태섭·정문화·정의화·정재문·정형근·정호선·조영재·차수명·하경근·한이헌·함종한·허남훈 의원 발의)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전자거래기본법안

(11월 19일 이상희·강경식·국창근·권영자·김고성·김기춘·김덕·김도연·김명섭·김용갑·김운환·김종하·김중위·김태호·김현욱·김형오·남궁진·박관용·박광태·박근혜·박세환·박우병·백남치·백승홍·신영국·양성철·양정규·이강두·이규정·이공규·이미경·이웅희·이재오·이태섭·이한동·정문화·정의화·정재문·정형근·정호선·조영재·조익현·조홍규·차수명·채영석·하경근·한승수·한이헌·함종한·허남훈 의원 발의)

11월 2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영재교육진흥법안

(11월 20일 이상희·강경식·권영자·김기춘·김덕·김도연·김명섭·김용갑·김종하·김중위·김태호·김현욱·남궁진·박광태·박세환·박우병·박헌기·백남치·양정규·이규정·이공규·이미경·이양희·이웅희·이재오·이태섭·정문화·정의화·정재문·정형근·정호선·조영재·차수명·하경근·한이헌·함종한·허남훈·홍사덕 의원 발의)

11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11월 20일 김원길·차수명·이상만·한화

갑·정일영·김근태·김종학·김인영·오장섭·김충일·어준선·김한길·구천서·이재명·이인구·장재식·허남훈·정세균·김동주·정한용·정우택·한영애·변웅전 의원 외 132인 발의)

11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방송법안

(11월 20일 강용식·박성범·박종용·이경제 의원 외 132인 발의)

11월 21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매장및모지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11월 21일 황규선·김병태·어준선·오양순·정의화 의원 외 58인 발의)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4일 김원길·박정훈·김근태·김인영·김충일·이재명·임채정·장재식·정세균·정한용·한영애 의원 외 25인 발의)

11월 25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11월 24일 정한용·김원길·한화갑·박정훈·김근태·김인영·김충일·이재명·임채정·장재식·정세균·한영애 의원 외 92인 발의)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4일 백남치 의원 외 20인 발의)

11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11월 24일 이상희·강경식·권영자·김기춘·김덕·김도연·김명섭·김용갑·김중하·김중위·김태호·김현욱·남궁진·박광태·박세환·박우병·백남치·양정규·이규정·이공규·이미경·이양희·이웅희·이재오·이태섭·정문화·정의화·정재문·정형근·정호선·조영재·차수명·하경근·한이현·함종한·허남훈 의원 발의)

11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국가표준기본법안

(11월 27일 이상희·강경식·권영자·김기춘·김덕·김도연·김명섭·김용갑·김중하·김중위·김태호·김현욱·남궁진·박광태·박세환·박우병·백남치·양정규·이규정·이공규·이미경·이양희·이웅희·이재오·이태섭·정문화·정의화·정재문·정형근·정호선·하경근·한이현·함종한·허남훈 의원

발의)

11월 27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5일 김영환·이성재·정호선·이태섭·천정배·김종배·최희준·배종무·김선길·김성곤·장영달·장영철·지대섭·류재건·방용석·이기문·김근태·정한용·김민석·김영배 의원 발의)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안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6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1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안

(11월 25일 남궁진·이상수·김원길·한화갑·김영배·김옥두·김충조·류선호·박종우·원유철·이성재·장성원·추미애 의원 외 91인 발의)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8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수상레저안전법안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법관징계법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정부 제출)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회교육법 개정법률안

(이상 5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정부 제출)

11월 28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안

전기공사사업법 개정법률안

송유관사업법 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중 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9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9건 11월 28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법안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철도소운송업법 개정법률안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하천법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 11월 26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이석현·김원길·한화갑·김민석·국창근·김태식·안동선·채영석 의원 외 96인 발의)

11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6일 천정배·김원길·한화갑·김경재·김명규·남궁진·박광태·손세일·이규정 의원 외 95인 발의)

1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유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류재건 의원 외 20인 발의)

재정경제부소관상품권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통계법 중 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

(이상 3건 11월 27일 정부 제출)

1999년도 미국의 수출신용공여(GSM)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은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3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류재건 의원 외 20인 발의)

보건복지부소관식품위생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정신보건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8일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 의원 외 17인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11월 28일 류재건·이성재·김홍신·오양순 의원 외 20인 발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안

(11월 28일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김홍신·오양순 의원 외 17인 발의)

이상 5건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김허남·박승국·정희경 의원 외 30인 발의)

11월 3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11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행정자치부소관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의규제폐지

등에관한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행정사법 개정법률안

(11월 28일 정부 제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8일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김홍신·오양순 의원 외 17인 발의)

이상 3건 11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
문화관광부소관청소년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 관한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11월 30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안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물검사법 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소관수산업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농업·농촌기본법안

종자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안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농림부소관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이상 16건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16건 11월 3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자원부소관대외무역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11월 3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환경부소관먹는물관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안

노동부소관공인노무사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 법률안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7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교통부소관건설산업기본법등의규제폐지등에 관한법률안

(11월 27일 정부 제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안

(11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해외이주법 중 개정법률안

재외동포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 11월 2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30일 조진형 의원 외 23인 발의)

1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30일 이성재·김명섭·김병태·황규선 의원 외 17인 발의)

1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199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월 30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99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월 30일 정보위원장 제출)

북한의 핵 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사찰 수용 촉구 결의안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과학관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6일 정부 제출)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군납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9월 25일 정부 제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2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1일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
비준 동의안**

(이상 6건 10월 13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1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1999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1월 16일 정부 제출)
(12월 1일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엔지니어링기술진흥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11월 11일 정부 제출)

(1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보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중 개정
법률안**

(9월 25일 정부 제출)
(12월 1일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결의안
(7월 10일 박관용 의원 외 21인 발의)

(12월 1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수정 의결

○의안 철회

농지법 중 개정법률안

(1996년 12월 11일 서석재 · 하순봉 · 박상규 ·
구천서 · 전용원 · 박헌기 · 조성준 · 황규선 ·
권수창 · 함중환 의원 외 47인 발의)
9월 22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가표준기본법안

(1997년 11월 3일 이상희 · 장영달 · 조영재 ·
이부영 의원 외 21인 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
법률안**

(11월 12일 김원길 · 박정훈 · 한화갑 · 김근태 ·
김인영 · 김충일 · 김한길 · 이재명 · 장재식 ·
정세균 · 정한용 · 한영애 의원 외 92인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전파법 중 개정법률안

(10월 12일 정부 제출)
11월 26일 제출자 철회 요구

행정사법 중 개정법률안

(8월 14일 정부 제출)
11월 28일 제출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통신언론진흥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7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7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중배 외 17인으로부터 이부영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통합방송법 제정에 관한 청원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5건 1998년 11월 17일 서울시 중구 태
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807호 언론개
혁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중배 외 15인으로부터
이부영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6건 11월 19일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

갯벌보전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꿈나
무아파트 206-202 장원 외 50인으로부터 이
완구 의원 외 18인의 소개로 제출)

**도류제 축조공사에 따른 염전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7일 대전시 서구 도마1동
21-35 최윤찬 외 40인으로부터 정일영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군장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염전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7일 대전시 서구 도마1동
21-35 최윤찬 외 33인으로부터 정일영 의원
외 17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국제종합무역전시장 건립 약속이행 촉구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
금3동 183 고양시자족권수호시민연대회의 상
임대표 강태희로부터 이택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0일 산업자원위원회에 회부

농업기반공사 설립 반대 등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8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남당
리 643-2 전종철 외 1만 5967인으로부터 허
남훈 · 김영일 의원 외 27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득조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95

한국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박영으로부터 조한천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0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번지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외 9803인으로부터 현경대·서한샘·임채정·김홍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경기은행 특정금전 신탁원금 보전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0일 인천시 남구 용현5동 627-111 수정아파트 가동 210호 신복점 외 116인으로부터 이강희 의원 외 7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3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660-9 삼보빌딩 전국일반화물자동차개인사업자연합회 회장 장세종 외 2447인으로부터 김동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경제위기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3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윤환 외 3256인으로부터 김민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건축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3일 광주시 북구 북동 56번지 장병순으로부터 윤원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임대주공아파트 분양가격 인하 등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314-12 주공아파트 363-1 6·7단지 공동분양대책위원회 안영식으로부터 백남치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윤환 외 2인으로부터 김재천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윤환 외 2인으로부터 정세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별관5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공정거래위원장 최정표 외 2인으로부터 김영선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4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장 유성희로부터 황성균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5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김부원으로부터 조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7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화성시 설치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5일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평리 116번지 군의회의장 홍순범 외 380인으로부터 박신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인상으로부터 조한천 의원 외 46인의 소개로 제출)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인상으로부터 김문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인상으로부터 이강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1998년 11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인상으로부터 이미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4건 11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서면 질문서 제출

반월특수지역에 관한 질문서

(11월 17일 신영국 의원 제출)

11월 19일 정부에 이송

○서면 답변서 제출

하나로통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11월 20일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통지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 승계자 결정에 대한 통지

1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3일 이형배 의원이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승계자로 결정 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